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09 판결 [보증금 지급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5387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09 판결

### 전문

원고상주시

피고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 선고 2016. 8.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20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분뇨, 축폐슬러지(침전물)과 음식물 쓰레기(이하 '하수 슬러지 등'이라고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가열하여 탄소로 만들어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하이테크'라고 한다)는 2006. 2. 24. 하수 슬러지 등의 탄화(炭化)기술과 관련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숯 제조에 따른 공해물질 제거방법 및 장치'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고, 동일한 기술에 관하여 2007. 8. 20. 환경부장관의 신기술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와 한국하이테크는 2009. 6. 16. 한국하이테크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한국하이테크가 직접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8. 원고와, 한국하이테크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2. 3. 6.부터 2015. 3. 5.까지, 계약기간 2011. 12. 28.부터 2012. 3. 5.까지, 하자책임기간 2012. 3. 6.부터 2015. 3. 5.까지, 계약자 한국하이테크로 정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하 '보증사고'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고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공사 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주계약 또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마. 한국하이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고 한다)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 1) 하수 슬러지 등이 슬러지 저장 호퍼로 반입되어 저장되었다가, 압출이송방식으로 1차 건조기까지 이송된다.
- 2) 1차 건조기로 이동된 하수 슬러지를 850℃ 가량의 폐열풍을 이용하여 함수율 80%에서 75% 정도로 수분건조한 후, 로터리 킬른형 건조기로 이송한다. 로터리 킬른형 건조기에서 직접열풍을 이용하여 500℃에서 550℃의 온도로 위 슬러지를 함수율 15% 이하로 건조한다.
- 3) 건조물은 건조물 저장소에서 배출된 후 탄화기로 공급되어, 400~550℃의 온도로 탄화된다. 탄화물은 하부의 냉각설비를 거쳐 탄화물 저장소로 이동된다.
- 4) 탄화기에서 배출된 폐열풍은 가스처리 설비로 보내지고, 이후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분진을 집진하여 하부의 더스트 챔버로 이동시키는 Cyclone, 미세분진을 처리하는 Prefilter를 거쳐 축열식 산화장치로 이동된다. 이후 축열식 산화장치는 800~850℃로 폐가스를 가열하여 연소시키고, 170℃ 이하의 청정가스를 배출한다. 배출된 청정가스는 Bag filter를 통해 탄소섬유나 남은 유해가스도 제거된 후 배출된다.

바. 한국하이테크는 이 사건 설비를 시공한 후, 2011. 12. 5.부터 2012. 3. 5.까지 이 사건 설비의 시운전을 수행하였다. 시운전 과정에 피고 한국하이테크는 2012. 1. 26.부터 이 사건 설비에 슬러지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설비는 2012. 1. 31.부터 슬러지를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시운전 종료시까지 총 147.8t의 슬러지를 공급하여 122t의 슬러지를 처리하였다. 단, 시운전 기간에는 초기 부하운전 5t/일, 중간 부하운전 10t~15t/일, 중간연속부하운전 20t/일, 최대 연속 부하운전 25t/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협약상 시운전계획과 달리, 이 사건 설비에 일일 최대 11t의 슬러지만을 공급하였다.

사.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 중이던 2012. 2.초와 2012. 2. 20., 2012. 2. 22.에 이 사건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 이 사건 설비는 2012. 3. 8. 준공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책임감리인인 주식회사 건화는 2012. 3. 원고에게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2012. 8. 12.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설비의 위탁운영업체를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이하 '티에스케이'라고 한다)로 선정하였다.

차. 이 사건 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되었고,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설비를 가동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는 시운전 단계에게 3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이 사건 설비를 가동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설비의 악취제거를 담당하는 핵심설비인 축열식 산화장치에 성능하자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하자 보수 검사 및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하자보수비용 178,000,000원 중 보증한도인

101,207,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계약자가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를 위배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설비의 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하자보증책임기간은 2012. 3. 6.부터 2015. 3. 5.까지인데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하자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보증책임을 없다.

## **3. 판단**

### **가.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을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 한국하이테크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를 위배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나. 이 사건 설비의 하자 발생원인에 대한 판단**

한국하이테크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를 위배하여 이 사건 설비를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설비를 시공할 당시, 원고가 백필터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에 발생한 하자가 위와 같은 백필터 위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설비에 발생한 하자는 ① 이 사건 설비의 설계 자체에 기인한 하자이거나, ② 이 사건 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할 것이다.

1) 한국하이테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 설비를 시공할 당시에도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하게 백필터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설비에서는 위 백필터의 위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2) 한국하이테크는 원고와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설비 시공의 책임감리인들인 주식회사 건화, 주식회사 이도이앤지가 이 사건 기술협약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여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한국하이테크나 책임감리인들에게 이 사건

설비의 시공과정에 설계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가 없다.

3) 원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설비로서 한국하이테크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설비는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고, 이 사건 설비 또한 한국하이테크가 운영할 당시에는 큰 문제없이 가동되었으나, 위탁운영주체를 티에스케이로 변경한 이후에는 악취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설비를 위탁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에 발생한 하자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를 위배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현기

**판사**강영재

**판사**김태환